

요약보고

1. **용역명**: 2017년 하반기 5~8호선 차량분야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용역
2. **목적**: 분진, 중금속, 소음 등 사업장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

3. 측정/평가 대상

- 작업환경측정 항목 및 개소: 분진, 중금속, 소음 등 7항목 336개소
- 화학물질 위험성평가: 2개 차량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중인 화학제품 평가

4. 시행절차

계획 수립	노·사 합의	발주/계약	측정시행	보고/설명회
· 작업환경 측정계획	· 측정계획 · 측정항목 · 현업담당지정 등	· 차량본부 통합발주	· 유해요인조사 · 측정실시 (협력업체 포함)	· 결과보고 · 설명회개최

5. 노·사 운영팀 구성

- 분야별 노·사 담당자(추후 지정), 보건관리자 등

5. 준공기한: 계약일로 부터 40일이내

6. 소요예산

- 예산과목 : 운수사업원가, 위탁관리비, 위탁관리비
- 소요금액 : 약 41백만원

※ 보건환경처 작업환경측정 예산을 차량계획처로 예산 재배정

7. 입찰방식: 제한경쟁입찰(지역제한_서울,인천,경기)

8. **결론**: 2017년도 하반기 법정 작업환경 측정을 기한 내 실시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사업장 내 유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. 끝.

「5~8호선 차량분야」

2017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계획(안)

2017. 10.

「5~8호선 차량분야」 2017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계획(안)

사업장 소음, 분진, 중금속 등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측정하여, 사업장에 적합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, 차량분야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함

I 관련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(작업환경측정 등) 및 제39조 (유해인자의 관리 등)
- 보건환경처-2036(2017.08.29.) 「5~8호선 작업환경 측정주관 변경 알림」
 - 5~8호선의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을 아래와 같이 본부별 주관·실시
- 차량계획처-2772(2017.09.26.) 「201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무 회의」
 - “201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·사 실무협의”
- 차량계획처-3210(2017.10.17.) 「2017년 작업환경측정 노사 실무 결과」
 - “작업환경측정 항목 및 개소는 2016년 하반기 기준으로 시행”
 - “201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주관은 차량본부(본사)에서 진행”

II 추진방향

- 차량분야 대상 작업환경측정 실시
- 동일 장소에서 이뤄지는 자회사 작업 포함하여 측정 실시
- 예비조사 결과를 노·사 측정기관이 협의하여 본 조사에 반영
- 노사공동 실무팀 구성 운영으로 측정/평가 공정성, 신뢰성 확보
- 작업장별 작업환경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기준 마련
-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병행 추진

III 추진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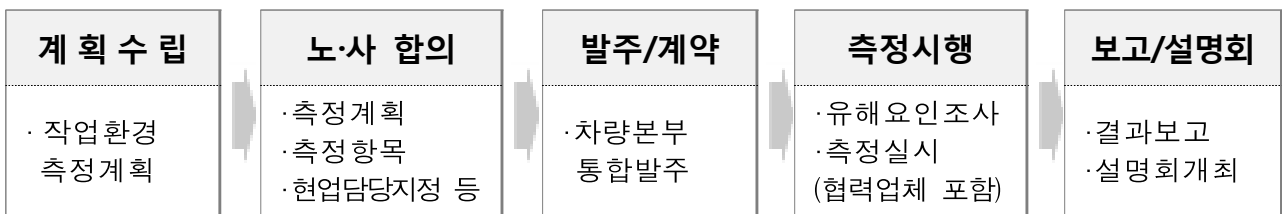
가. 작업환경측정

- 측정분야 : 5~8호선 차량분야 (자회사 업무 포함)
- 측정항목 : 분진, 중금속, 유기화합물, 소음 등 7개 항목
- 측정개소 : 336개소 (전년 대비 7개소 증가, 2016년 329개소 측정)

나. 작업환경평가

- 평가분야 :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
- 2개 차량사업소에서 사용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

다. 시행절차



라. 결과 제출

-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측정결과 제출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(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) 2항

- ② 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IV 세부계획

가. 용역명: 2017년 하반기 5~8호선 차량분야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용역

나. 목 적: 분진, 중금속, 소음 등 사업장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

다. 측정/평가 대상

- 작업환경측정 항목 및 개소: 7항목 336개소
- 화학물질 위험성평가: 2개 차량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중인 화학제품 평가

라. 준공기한: 계약일로 부터 40일 이내

마. 소요예산

- 예산과목 : 운수사업원가, 위탁관리비, 위탁관리비
- 소요금액 : 약 41백만원
- ※ 보건환경처 작업환경측정 예산을 차량계획처로 예산 재배정

바. 입찰방식: 제한경쟁입찰(지역제한_서울,인천,경기)

V 행정사항

가. 노·사 참여팀 운영

- 구 성 : 분야별 노·사 담당자(추후 지정), 보건관리자 등
- 임 무 : 측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임무 수행
 - 작업장 특성, 업무별 작업공정 파악 등을 위한 자료 제공
 - 측정기관 성실한 조사 실시여부 감독 및 작업장 출입 협조
 - 작업환경측정 관련 업무지원 및 이례 상황시 보고 등

나. 작업환경 측정/평가 관련 업무협조 및 지원(차량사업소)

- 측정 및 평가 관련 노·사 참여팀 임회 직원의 소속별 근무협조 (시내출장 또는 회행)
- 측정기관 및 임회 직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관리
 - 작업관련 기본 안전수칙 통보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등
- 측정대상 작업공정 작업자에게 측정 항목, 일정 등 사전 공지
- 측정기관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시 적극 협조 지원

VI 결 론

- 차량본부 사업장내 유해요인을 정확히 파악, 2017년도 하반기 법정 작업환경 측정을 기한 내 실시하여 법적의무를 이행하고
- 사업장 내 유해요인을 제거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. 끝.